

[별표 9]

지방자치단체 청사·관공선 정비기금 배정

1.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

가. 개요

- 1) 설치목적 : 지방청사정비 지원
- 2) 설치목적 : 지방청사정비 지원
- 3) 기 금 명 :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
- 4) 기금관리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- 5) 대여조건 :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+ 0.5%가산,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

나. 지원대상 및 기준

- 1) 지원대상 : 전국 시·도, 시·군·구 자치단체

※ 단, 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는 대상이 아님

2) 지원기준

① 지원대상

- 지방청사 신축, 재축, 리모델링(증·개축, 대수선) 등
- 지방청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비

- ◆ **청사(廳舍)** : 지방자치단체 소유로서 직접 사무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(시도, 시군구 본청, 문화·예술·체육시설, 사업소 등)
- ◆ **신축(新築)** :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(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)
  -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,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- ◆ **재축(再築)** 건축물이 천재·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(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)
- ◆ **리모델링(증축·개축·대수선)** :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·개축·대수선을 행하는 행위(건축법 제2조제10호)
- ◆ **에너지 절약시설** : 신·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,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
- ◆ **건축비** : 건축·토목·기계·전기·조경·통신 등 시설설치비를 말함
  - 토지 취득비, 설계용역비, 기타 부대비용은 제외

② 지원규모 : 붙임 4 참조

2.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기금

### 가. 개요

- 1) 설치목적 : 지방자치단체 관공선의 신축 건조 및 대수선 지원
- 2) 기 금 명 :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 등 정비기금
- 3) 기금관리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- 4) 대여조건 :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+ 0.5%가산,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

### 나. 지원대상 및 기준

- 1) 지원대상 :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 및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

#### 2) 지원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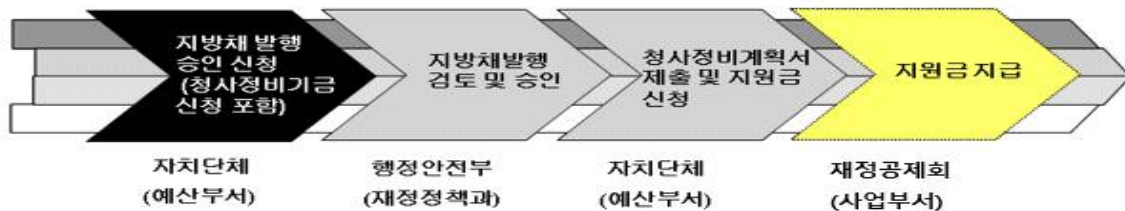
##### ① 지원대상

- 관공선 건조비(선체 · 기관 · 의장품 등)
- 관공선 대수선비(성능개선 · 수리비 등)

##### ② 지원규모 : 붙임 4

- 한도액 : 1척당 50억원
- 지원조건 : 1척당 총 건조비의 50% 이내 배정

### 3. 기금 지원절차



### 4. 승인기준

#### 가.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

- 1)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등으로 낮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  -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제출
- 2) 임시가건물 또는 임대건물을 사용 중인 경우
- 3) 청사신축 부지를 확보한 경우
- 4) 기존 청사 활용방안
  -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추진 곤란 사유 등
- 5)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획득 방안
- 6) 지방청사 신·증축 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및 활용방안 등 포함 여부

- 기존청사의 활용방안 등의 검토가 형식적인 경우 미승인을 원칙으로 함  
나.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

- 1) 신축 건조를 하는 경우
- 2) 기존 선박의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대체건조를 하는 경우
- 3) 목선 등과 같이 선박의 재질 특성상 부식이 빨리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

## 5. 제출서류

가.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

- 1) 「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」에 의한 별첨 서식 "6. 지방청사정비사업" 참조
- 2)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시 타당성 조사결과(요약) 첨부
  - 리모델링 불가 사유 등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요약
- 3)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
  - 신·증축하는 청사의 사업 및 규모 비교
    - ※ 부지면적, 청사 연면적, 사업비,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등
  -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추진 방안 등
  -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설치 계획서 및 수량 산출서 등
  - 기타 신·증축과 관련한 자료 등

나.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

정비

- 1)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및 정비사업 서식
  - 건조톤수, 사업비, 연도별 추진내역 등
- 2) 기타 신규 또는 대체 건조, 정비 사업 관련 자료 등

<관련문의> 한국지방재정공제회

- 청사정비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정비기금
  - 대표번호 ☎ 02-3274-2114